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6년 3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인증산업진흥과 이석우 과장(043-870-5500), 배진한 연구관(5502) 구창환 연구사(5505)

“융합신제품의 시장진입 빨라진다”

- 국표원 內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 설치 -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관섭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 內에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 개소식을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 (일시/장소) : '16. 3. 24(목) 14:00, 국가기술표준원 본관동
 - (참석자) 산업부 1차관, 국표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등 15여명
- 동 센터는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사전 컨설팅, 인증신청 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지난 2.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임

대통령 발언 발췌

...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지켜본 후 사후에 인증규격을 만드는 등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는 융합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이 인·허가 기준이 없거나 소관부처가 불명확하여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 융합신제품 개발 사업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동 인증을 신청하면 접수기관은 적합성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는 Fast-Track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 1 -



MIN
TRA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기존 법령상 인증·허가·승인 등의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6개월 내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 발급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법령상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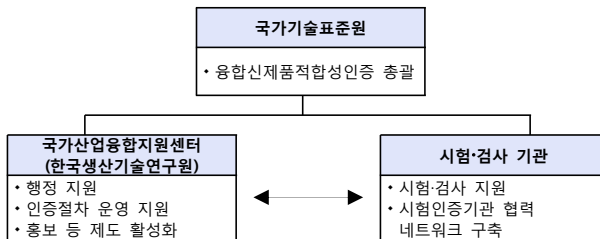
- 국가기술표준원은 동 센터가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의 대표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융합신제품인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개발한 융합신제품의 시장진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함께 국가기술표준원은 융합신제품에 대한 인증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부담 등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해외인증을 근거로 국내 시험·검사 등 일부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지난 3.22일 개정고시된 운영요령(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운영요령)에 따르면 해외에서 공인된 인증을 받은 경우 동 적합성인증 협의체에서 이를 검토하여 해당 인증의 공신력이 인정될 경우 관련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해외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다시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검사를 진행함에 따른 인증비용 부담 및 시장진출 지연 애로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배진한 연구관(043-870-55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센터의 업무

- (주요내용) 기업이 융합 신제품을 개발하였으나 기존 인증(허가,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에서 수용하지 못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Fast-Track (6개월내)으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통해 애로를 해결
 - 근거법령 : 산업융합촉진법 제3장(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문제점 및 필요성) 기존 법령 미비로 산업융합 신제품의 '판매 불가' 또는 '시장출시 지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작용할 때,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
 - 융합 신제품의 경우 기존 인증체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재로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시장출시에 어려움
 - 트럭지게차(㈜에스엠중공업)의 경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분류에 따른 관련 법·규정으로 인해 시장출시까지 3년 9개월 소요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적합성 인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가능
-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운영체계
 - 국토원은 소관부처별로 분산된 인증 절차를 총괄하고, 국가산업융합 지원센터와 전문시험기관은 각각 행정 및 시험·검사 업무를 지원



- 3 -

참고 2 융합신제품 사례

- 산업용 융합안전모(인증 완료)

제품명	통신조명센서 등이 융합된 산업용 융합안전모		
제조사	(주)KMW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유형	강제인증 / 해외기준 없음		
인증명	보호구안전인증 KC인증(산업안전보건법)		
제품특성	안전모에 무선통신, 조명, 센서 등이 융합되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이 가능한 융합 안전모		
예로내용	구멍, 무게규정(보호구 의무안전고시)에 의해 안전모 등급인증을 받을 수 없어 현장사용 불가		
인증결과	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 제안한 기준에 의거 시험·검사에 합격하여 인증서 발급, 산업융합촉진법 §13③에 의하여 보호구안전인증 취득		

- LED안전유도블록(인증 완료)

제품명	LED안전유도블록	
제조사	성풍솔레드(주)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유형	임의인증 / 해외기준 없음	
인증명	KS인증(산업표준화법)	
제품특성	고강도 콘크리트 위에 LED 소자 IC회로판, 플라스틱 케이스, 우레탄을 체결방식으로 결합한 융합 제품	
예로내용	• 융합 제품에 대한 성능, 우수성 보증 인증규격 부재 • 공공부문 판로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인된 성능(품질) 인증을 제시할 수 없어 실질적인 판매에 애로	
인증결과	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 제안한 기준에 의거 시험·검사에 합격하여 인증서 발급	

- 4 -

○ 산업용 커버 체결형 방진마스크(인증 진행 中)

제품명	산업용 커버 체결형 방진마스크	
제조사	신용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인증유형	강제인증 / 해외기준 없음	
인증명	보호구안전인증 KC인증(산업안전보건법)	
제품특성	안면부여과식 마스크의 커버체(알루미늄, 고무밴드, 배기판)를 분리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여과재만 교체하여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방진마스크	
예로내용	보호구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에 명시되어 있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의 '형태 및 구조분류' 규정·에 의해 2급 방진마스크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음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마스크는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의거 안전인증(KC)을 강제함	
진행현황	· 적합성인증협의체 회의('15.12.28)를 통해 인증 기준 등을 협의하였으며, 인증기준, 시험·검사 방법 등을 의결('16.1.18)함 ·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험·검사가 진행중	

○ 자동배설처리기(인증 진행 中)

제품명	자동배설처리기	
제조사	(주)큐리코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인증유형	임의인증 / 해외기준 없음	
인증명	고령친화용품인증(산업표준화법)	
제품특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자동배변처리 기계로 환자가 배설을 했을 때 대·소변을 자동으로 감지해 배변의 종류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프로세스를 거쳐 세척과 흡입, 비데, 건조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	
예로내용	'자동배변처리기' 단체표준[KSPA 1004 : 2009]이 존재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나, 인증기준이 융합신제품에 적합하지 않아 인증 받기 어려움	
진행현황	적합성인증 신청('16.1.4., 산업부) 이후 적합성인증협의체 회의('16.2.25)에서 적합성인증기준, 시험·검사방법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합성인증기준 등을 마련 중	

